

2023. 7.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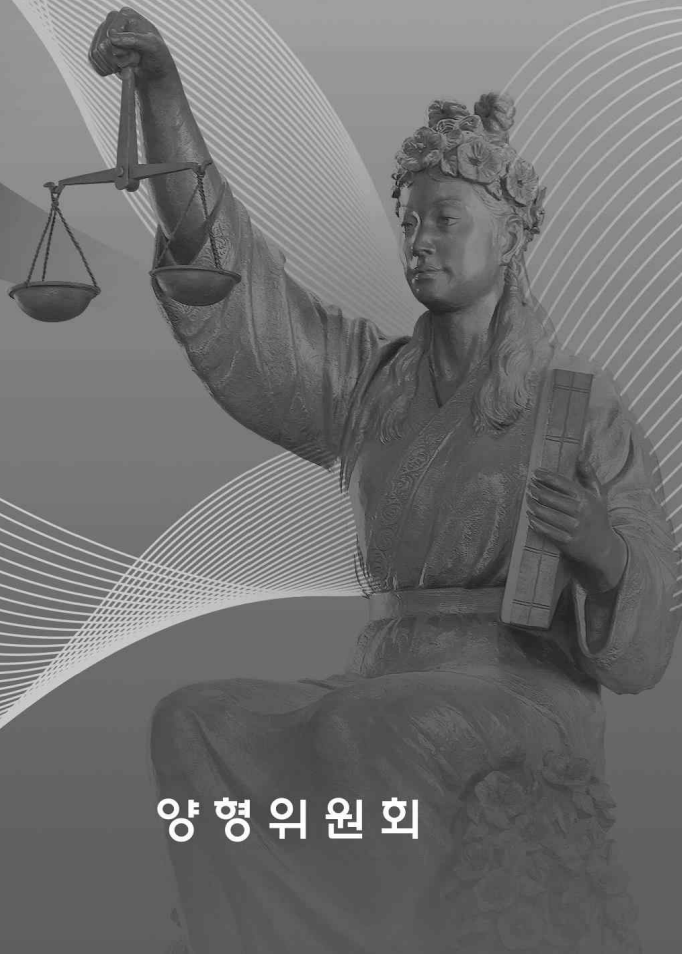
2023

Sentencing

Guidelines

양형기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증거인멸,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기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 환경, 관세,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위원회

발 간 사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 4. 27. 출범하였고, 그동안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책자 발간을 통하여 양형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형사재판 실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6. 발간된 『2022 양형기준』 책자에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증거인멸,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형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도주·범인 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 환경범죄 양형기준 등 모두 4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이 수록되었습니다.

그 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이 2022. 7. 4. 의결되어 2022. 10. 1.부터 시행되고 있고,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과 교통범죄,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이 2023. 4. 24. 의결되어 2023.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새롭게 설정되거나 수정된 양형기준을 모두 반영하여 『2023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양형기준이 형사재판 실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책자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소속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6.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 상 원

『양형기준의 구성』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II.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양형기준 ❖

① 살인범죄 양형기준	1
② 뇌물범죄 양형기준	17
③ 성범죄 양형기준	29
④ 강도범죄 양형기준	65
⑤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83
⑥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97
⑦ 무고범죄 양형기준	111
⑧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121
⑨ 사기범죄 양형기준	143
⑩ 절도범죄 양형기준	157
⑪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173
⑫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189
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201
⑭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215
⑮ 마약범죄 양형기준	247
⑯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269
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293
⑱ 폭력범죄 양형기준	309
⑲ 교통범죄 양형기준	329
⑳ 선거범죄 양형기준	351
㉑ 조세범죄 양형기준	379
㉒ 공갈범죄 양형기준	397
㉓ 방화범죄 양형기준	413
㉔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429
㉕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443
㉖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455

27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471
28	장물범죄 양형기준	501
29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515
30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531
31	손괴범죄 양형기준	545
32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563
33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581
34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597
35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611
36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625
37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637
38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655
39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669
40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685
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695
4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705
43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731
44	환경범죄 양형기준	747
45	관세범죄 양형기준	775
46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803

❖ 양형기준 해설 ❖

I. 서론	824
양형기준의 의의	824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824
양형기준의 효력	826
II. 양형기준의 적용	827
양형기준의 적용대상	827
양형기준의 적용방법	830
III. 형종 및 형량 기준	832
범죄유형 결정	832
권고 영역 결정	834
형량범위 결정	84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결정	849
선고형의 결정	855
IV. 집행유예 기준	856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	856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구분	856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858
경합범의 집행유예 기준	863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863
V. 양형기준 적용 사례(단일범 사건)	864
범죄유형 결정	864
권고 영역 결정	865
형량범위 결정	866
선고형 결정	866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867

그 밖의 구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시함

◆ 약 어 표 ◆

- 가축분뇨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대부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사행행위규제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산림자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석유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전통소싸움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채권추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퇴직급여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13. 4. 22. 수정, 2013. 5.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 살인범죄 양형기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간 등 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1항), 위 각 범죄의 미수죄(형법 제254조, 제324조의5, 제342조, 성폭력처벌법 제15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6항)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한 상해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피해자 유발(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체유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구호 후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증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정의]

01¹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2¹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¹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4¹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05¹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01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2 |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03 | 계획적 살인 범행

- 살인범행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4¹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05¹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6¹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07¹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08¹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09¹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0¹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¹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2¹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3¹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4¹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제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¹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16¹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지미수 ● 피해자 유발(강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한 상해 ● 피해 회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위험한 물건 휴대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자 유발(보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 뇌물범죄 양형기준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은 뇌물수수 등(형법 제129조 제1항), 사전뇌물수수 등(형법 제129조 제2항), 수뢰 후 부정처사(형법 제131조 제1항), 부정처사 후 수뢰(형법 제131조 제2항, 제3항),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등(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뇌물공여 등(형법 제133조 제1항), 제3자 뇌물교부 등(형법 제133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급 이상 공무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02¹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01¹ 뇌물수수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뇌물공여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01 | 뇌물수수¹⁾

가.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뇌물공여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²⁾

2) 2011. 4. 15. 추가

[공통원칙]

01¹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³⁾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¹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3) 2011. 4. 15. 수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⁴⁾

4) 2011. 4. 15. 수정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3급 이상 공무원 ●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뢰 관련 부정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02¹ 뇌물공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뇌물공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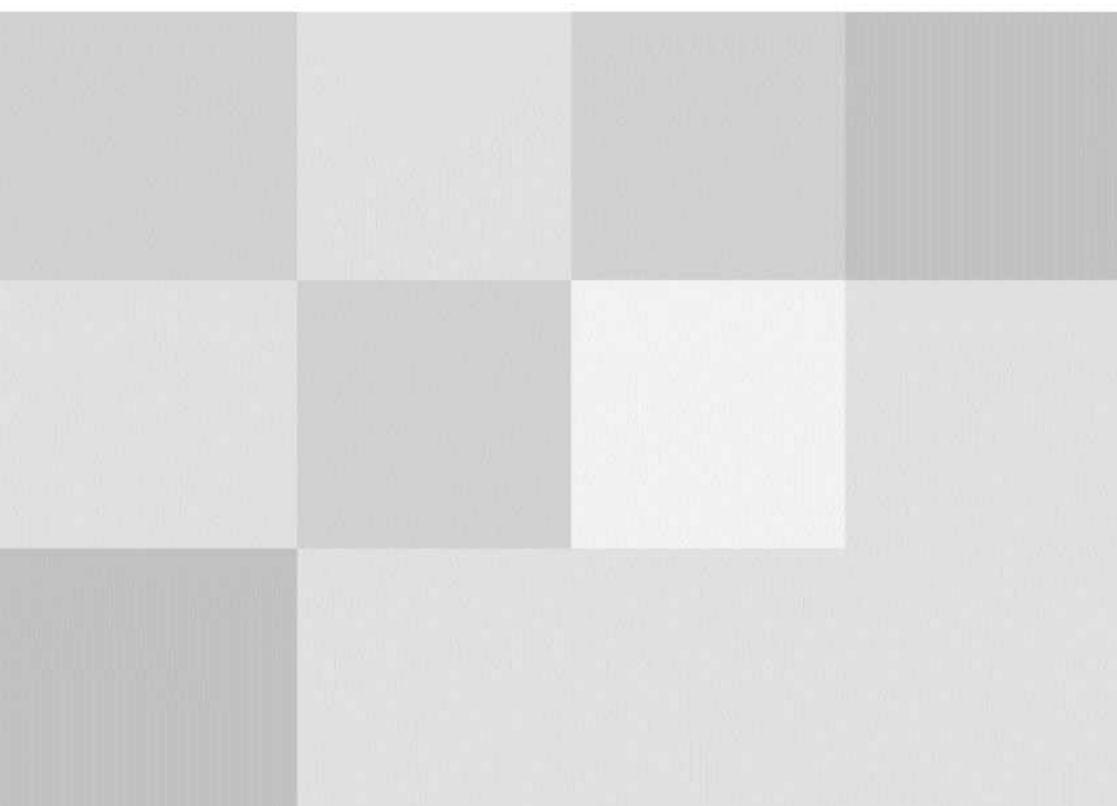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⁵⁾

5) 2011. 4. 15. 수정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0. 6. 29. 수정, 2010. 7. 15.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12. 1. 30. 수정, 2012. 3. 16. 시행
2013. 4. 22. 수정, 2013. 6. 19. 시행
2020. 5. 18. 수정, 2020. 7. 1. 시행
2022. 7. 4. 수정, 2022. 10.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 성범죄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치사(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형법 제305조),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주거침입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강간 등 치사(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3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강간 등 치사(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강도강간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군인 등 강간(군형법 제92조), 군인 등 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 군인 등 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 군인 등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군인 등 강간 등 상해·치상(군형법 제92조의7), 군인 등 강간 등 치사(군형법 제92조의8),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바목)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청소년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3, 4유형)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강제추행죄, 장애인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균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5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공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공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윤간(2, 4유형) 임신(2, 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비난 동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5유형) ● 임신(2, 5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마.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 등 강제추행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2	군인 등 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 등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 임신(3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다.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 등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군인 등 유사강간 /군인 등 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양형인자는 균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형법 제299조

(2) 제2유형(청소년 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유사성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흥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제3항

(4) 제4유형(강도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2)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흥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

(4) 제4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5) 제5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 제1유형(의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2)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을 간음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 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3) 제3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정도에 해당하는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4) 제4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8조)
의제강제추행(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8조)

(2) 제2유형(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간(13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
의제유사강간(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의2)
의제강간(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
의제유사강간(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의2)

(3) 제3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제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4) 제4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5항

(5) 제5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강도가 13세 미만자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마. 균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 등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2) 제2유형(군인 등 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 등을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

(3) 제3유형(군인 등 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 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군형법 제92조의4

02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299조)

(2) 제2유형(일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청소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항)
청소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4)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항)

(5)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3항)

(6)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준강간/유사 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항)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2항(제301조)

(2) 제2유형(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3) 제3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

(4) 제4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4항)

(5) 제5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다. 균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 등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인 등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균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3, 제92조의4)

(2) 제2유형(군인 등 유사강간/군인 등 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인 등 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균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2, 제92조의4)
군인 등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균형법 제92조의7(제92조, 제92조의4)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5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군인 등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치사	군형법 제92조의8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바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01 | 일반적 기준⁶⁾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6)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임신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카.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너.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더.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러. 2차 피해 야기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2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 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윤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중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 ● 중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20. 9. 14. 수정, 2020. 10.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4 강도범죄 양형기준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준강도, 준특수강도(형법 제335조), 강도상해·치상(형법 제337조), 강도치사(형법 제338조), 상습강도 등(형법 제341조), 누범강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금융기관 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총기 사용(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흉기 단순 휴대(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

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기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금융기관 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총기 사용(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흉기 단순 휴대(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상습·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금융기관 강도 ●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 중한 상해(누범강도) ● 총기 사용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일반강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순 강도	형법 제333조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형법 제335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휴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02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일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38조

04¹ 상습·누범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1조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양형인자의 정의]

01 | 일반적 기준⁷⁾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7)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아. 경미한 폭행·협박

-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중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제1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02 | 제2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03 | 제3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04 | 제4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05 | 제5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01¹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03¹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4¹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
 -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
 -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능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5¹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예컨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6¹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07¹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8 |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09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0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¹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2¹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¹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⁸⁾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8) 2011. 4. 15. 수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01¹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¹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¹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⁹⁾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9) 2011. 4. 15. 수정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횡령·배임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횡령·배임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반복적 범행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¹⁰⁾

10) 2011. 4. 15. 수정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7. 4. 10. 수정, 2017. 5.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6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위증·증거인멸범죄의 양형기준은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 모해위증(형법 제152조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위 법 제14조 제1항), 특허법상 위증(위 법 제227조 제1항), 실용신안법상 위증(위 법 제47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상 위증(위 법 제83조 제1항), 상표법상 위증(위 법 제94조 제1항),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제1항), 증인은닉(형법 제155조 제2항), 모해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제3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위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자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 ● 소극 가담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증거인멸·증인은닉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 증거인멸·증인은닉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위증

가. 제1유형(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나. 제2유형(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02 | 증거인멸·증인은닉

가.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나. 제2유형(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 증인은닉 등을 한 형법 제155조 제3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01 | 위증¹⁾

가. 우발적 범행

-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위증의 내용이 요증 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다.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라.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한다.
 - 형법상 위증 :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 특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실용신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디자인보호법상 위증 :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11) 증거인멸·증인은닉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상표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마. 미필적 고의

-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증언자의 학력·연령·증언 내용·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한다.

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증거인멸·증인은닉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라.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제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01¹ 위증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우발적 범행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증거인멸 · 증인은닉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¹²⁾

12) 위증 유형은 2011. 4. 15. 수정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7 무고범죄 양형기준

무고범죄의 양형기준은 무고(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자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제1유형(일반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02 | 제2유형(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01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02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04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05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6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07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8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09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 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0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1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중한 피해결과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선의 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¹³⁾

13) 2011. 4. 15. 수정

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2014. 3. 31. 수정, 2014. 10. 1. 시행
2018. 7. 23. 수정, 2018. 8.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8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형법 제287조),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제1항),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약취·유인된 사람의 국외이송(형법 제288조 제3항), 인신매매(형법 제289조 제1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매매(형법 제289조 제2항),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매매(형법 제289조 제3항), 국외이송 목적 매매/매매된 사람의 국외이송(형법 제289조 제4항), 약취·유인·매매·이송 상해·치상(형법 제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치사(형법 제291조 제2항),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형법 제292조 제1항), 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의 사람 모집·운송·전달(형법 제292조 제2항),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 인질상해·치상(형법 제324조의3),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인질강도(형법 제336조), 인질강도상해·치상(형법 제337조), 인질강도치사(형법 제338조), 재물 등 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 취득(특정범죄가

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상해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추행·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약취· 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4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5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3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9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침착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경미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3유형 중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 인질강도	2년 - 3년6월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3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 3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유형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공동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가.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1항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	형법 제292조 제2항

나.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구성요건	적용법조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다.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라.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마. 제5유형(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살해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02¹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가.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나.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다. 제3유형(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인질상해·치상	형법 제324조의3
인질강도상해·치상	형법 제337조

03¹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가. 제1유형(인질강요/인질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나.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다. 제3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04¹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나.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인질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4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약취·유인범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마목, 파목(마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마목, 파목(마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약취·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2인 이상 공동 범행

- 2인 이상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타.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상해·치상의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거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감금의 경우 : 감금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 유기의 경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가혹행위의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24시간 이상 잠재우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하.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약취·유인·매매·이송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너.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¹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¹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¹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상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9 사기범죄 양형기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형법 제348조),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일반사기

가.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조직적 사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양형인자의 정의]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지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 기망의 내용이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

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단순 가담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 일반사기 범행과 조직적 사기 범행이 상습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2016. 7. 11. 수정, 2016. 9.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0 절도범죄 양형기준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상습절도(형법 제332조, 제329조 내지 제331조), 누범절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 제5항, 제6항), 임산물 등 절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산림문화자산 절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문화재 절도(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 송유관 석유절도(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누범절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범죄 ● 피해 경미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2유형(일반절도)

-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대인절도)

-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소지품을 껌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경우(속칭 : 날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속칭 : 소매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02¹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절도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나.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03¹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가.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절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경우
-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자.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특수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운반 등에 있어서 단 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카.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

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하.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¹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¹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경미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공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문서 등 위조·변조(형법 제225조), 자격 모용 공문서 등 작성(형법 제226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형법 제227조), 공전자기록 위작·변작(형법 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형법 제228조 제1항), 위 문서 등의 행사(형법 제229조), 공문서 등 부정행사(형법 제230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영업적·비조직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행사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02¹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목적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03¹ 공문서 등 부정행사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유형의 정의]

01¹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자격모용 공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26조, 제229조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및 동 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가.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비영업적·비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위조·변조행위 등

나.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라 함은 위조·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알선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02¹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가. 제1유형(소극적 목적) : 직무상 편의, 편법적 직무수행, 직무상 과실 은폐 등 소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현지 확인 없이 그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보조자가 행한 행위를 감독자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직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나. 제2유형(적극적 목적) : 이익을 취득하게 할 적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허위 수사·조사 서류 작성
- 피감독자에 대한 편의 제공
- 이익 획득 또는 의도로 허위공문서 작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03¹ 공문서 등 부정행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양형인자의 정의]

01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¹⁴⁾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14)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아.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판결문, 여권, 중요 지위에 관한 신분증명서, 특허증, 인감증명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종전의 담당자, 주위의 유사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만연히 따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외부 범죄조직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심각한 수사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행정조치나 인·허가가 이루어져 그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¹ 공문서 등 부정행사

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자격사칭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 부정행사의 목적이 된 공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중 취득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친족상도례, 피해자의 불특정 등)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진지한 반성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사문서 등 위조·변조(형법 제231조), 자격 모용 사문서 등 작성(형법 제232조), 사전자기록 위작·변작(형법 제232조의2), 허위진단서 등 작성(형법 제233조), 위 문서 등의 행사(형법 제234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사문서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02¹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동기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동기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유형의 정의]

01¹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문서 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격모용 사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32조, 제234조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동 행사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02¹ 허위진단서 등 작성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진단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33조, 제234조

가. 제1유형(소극적 동기)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나 제3자의 업무상 편의, 편법적 업무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

- 보험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진단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분실하였다가 이를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끼워 넣은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경우
- 실제 환자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사진이나 영상, 통화 등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환자나 보험금 청구인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경우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모한 경우

나. 제2유형(적극적 동기) : 적극적으로,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 보험금 편취 목적, 병역회피 목적, 장애인증 발급을 통한 장애인 자격취득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격 취득 목적 등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아.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 사문서 위·변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2016. 12. 5. 수정, 2017. 1.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강요(형법 제136조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공용물무효·파괴(형법 제141조 제1항, 제2항),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형법 제144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기준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7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공무집행방해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02 | 공용물무효·파괴

가. 제1유형(공용물무효)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형법 제141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공용물파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03¹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가.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 을 상해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나.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 을 사망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 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 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

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2015. 4. 13. 수정, 2015. 5.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6조의2¹⁵⁾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¹⁶⁾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¹⁷⁾ 제3호,¹⁸⁾ 제6호의2,¹⁹⁾ 제7호,²⁰⁾ 제2항,²¹⁾ 제3항,²²⁾ 제4항 제1의2호²³⁾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²⁴⁾ 제2항,²⁵⁾ 제3항, 제4항, 제94조 제1항 제1호,²⁶⁾ 제2호,²⁷⁾ 제2호의2,²⁸⁾ 제2항,²⁹⁾ 제3항,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7조 제4항,³⁰⁾ 제9조 제4항,³¹⁾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³²⁾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제7조 제4항과 제9조 제4항은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
- 15)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
 - 16) 우수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허위광고, 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농산물·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지리적표시품에 관한 혼합판매 등, 지리적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
 - 17) 기립불능의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
 - 18) 가축에 물 먹이기 등 행위
 - 19)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 20)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 판매
 - 21) 5년 이내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제7호 동종재범
 - 22)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 23) 축산물의 가공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하는 행위
 - 24)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행위
 - 25) 마황, 부자, 천오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행위
 - 26)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행위, 미고시 화학적 합성물 등 판매행위
 - 27) 유독기구 판매
 - 28)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 29) 5년 이내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종재범
 - 30)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1) 식약처장이 정한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 32)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제88조³³⁾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조의2 제2항³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³⁵⁾ 제3호, 제2항,³⁶⁾ 제3항, 제44조 제4호,³⁷⁾ 제6호,³⁸⁾ 제7호³⁹⁾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⁴⁰⁾ 제2항⁴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⁴²⁾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1호 내지 제7호, 제11호⁴³⁾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5조 제2호 내지 제5호⁴⁴⁾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함)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이미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변

33)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34) 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에 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35)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성분, 품질,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36) 5년 이내 제43조 제1항 제2호 동종재범

37)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성분, 품질,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38)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라는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39)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용기·포장에 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혼동할 유사표시 등 행위

40) 용기·포장·첨부분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된 의약품이나 위조된 의약품의 판매 행위

41) 의약품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허위표시 또는 광고 금지 행위

42) 의약품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43)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제31조 제2항·제3항과 제41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52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식약처장이 정한 타르색소와 다른 타르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44) 제8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 등 행위

조, 그 정을 알고 판매·취득·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약사법 제 62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취득·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5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7조 제1항⁴⁵⁾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45) 무면허 의료행위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가족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¹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2유형) ●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허위표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iii)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iii)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iii)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함),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한 표시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i)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제9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한 표시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i)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ii) 소비자 기만 등 (iii) 다른 업체 등 비방 (iv) 무심의 등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중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43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중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ii)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 (iii)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사표시 금지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같은 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ii)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iii)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iv)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i)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45조 제1항 제6호의2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전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5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6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축산물을 판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후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p>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p> <p>(i)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ii) 소비자 기만 등 (iii) 다른 업체 등 비방</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p>	<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p>
<p>(i) 의약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미비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ii)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i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p>	<p>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단, 위 조 의약품 판매 등의 경우는 제외함),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p>	<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p>

02¹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p>(i) 식약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 (ii) 식약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 (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p>	<p>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p>	<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p>
<p>(i) 식약처 고시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진열 (ii)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p>	<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p>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p>기준, 가공기준이나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가축 또는 판매 목적 수입 축산물의 도살·처리, 집유 및 가공 등</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의2호</p>	<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p>
<p>(i)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p>	<p>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중 '위조 의약품'의 경우에 한하며,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p>	<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p>
<p>다음 각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 (i)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ii)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iii) 식약처장이 정한 성질·상태·품질·저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iv)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p>	<p>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며,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p>	<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p>
<p>제8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p>	<p>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5조 제5호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p>	<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p>
<p>(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 (i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 (iii)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변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판매·취득·알선</p>	<p>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신고된 식품 등의 위·변조 등 경우에 한함)</p>	<p>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p>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ii)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62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위·변조 등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나.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 1. 마황 2. 부자 3. 천오 4. 초오 5. 백부자 6. 삼수 7. 백선파 8. 사리풀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1년 이상의 징역
제9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항	1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제94조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3조 제4항	1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위해식품 등, 병든 동물 고기 등,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 (ii)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진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43조 제1항 제3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3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ii)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의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7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45조 제1항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전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5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7호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축산물을 판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후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불결한 물질 또는 썩은 물질로 된,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이물질이 섞여 있는, 식약처장이 정하지 아니한 타르색소가 사용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 (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4호 내지 제7호,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이 물이 혼입되거나 부착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된(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5조 제2호 내지 제5호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 (ii)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식품위생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다. 제3유형(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소해면상뇌증(광우병),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	3년 이상의 징역
제9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항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제9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3조 제4항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라. 제4유형(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 (ii)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마. 제5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2, 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 2, 3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호(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 제3호(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03¹ 부정의료행위

가.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부정의료업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다.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 1, 2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양형인자의 정의]

01¹ 허위표시⁴⁶⁾

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100% 외국산 쌀을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여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실제로는 수입 고춧가루 50%와 국산 고춧가루 50%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수입 고춧가루 30%, 국산 고춧가루 7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를 의미한다.

다.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같은 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46)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단, '위조 의약품' 판매 등의 경우는 제외함),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라.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품인 경우
 - 백화점이나 전문 대리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공신력이 부여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인 경우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기업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허위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

사.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망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포장시설 기타 자동화 설비, 인쇄된 라벨이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다음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차.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2,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2

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타. 가족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다음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파.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보건범죄(허위표시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및 부정의료행위 유형의 범죄를 모두 포함)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산물이 부족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산물을 허위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표시 범죄를 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이 경우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의미한다.

너.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⁴⁷⁾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의미한다.

다.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7호

47)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면, 임상실험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등).

마.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03¹ 부정의료행위

가.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함은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상태, 뇌사 등 현대 의료수준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라고 함은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자발적·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

- 단순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와 같이 해석상으로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사전에 허락한 경우로서 적극적 요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허위로 표시된 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 및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허위표시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10년 이내) ● 3유형인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1유형인 경우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가족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10년 이내)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중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중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3¹ 부정의료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10년 이내) ● 2, 3유형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2, 3유형)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경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2015. 4. 13. 수정, 2015. 5. 15. 시행

2020. 9. 14. 수정, 2020. 10. 15.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5 마약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2항,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중누범



02¹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중누범

03¹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04 |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중누범

[유형의 정의]

01¹ 투약·단순소지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각물질 ● 섭취·흡입/같은 목적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 등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군 임시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가중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가중 ● 1/2 가중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로인, 염류, 함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지·소유·사용·관리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군 임시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02¹ 매매·알선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각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알선·수수·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 수수 ●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군 임시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가중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알선·수수·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알선·수수·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수수·성분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향정 원료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가.목 원료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제공·흡연·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군 임시마약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범죄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03¹ 수출입·제조 등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원료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군 임시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징역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나.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군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 상습 수출입·제조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04¹ 대량범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아.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행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2. 6. 18. 의결, 2012.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6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2항),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특정경제범죄법 제6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02¹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알선수재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임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증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알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01 |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2항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 (1) 제1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02¹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 (1) 제1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6) 제6유형 : 수재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 제1항, 제2항

- (1) 제1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증재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증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 (1)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01¹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⁴⁸⁾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 스스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주가 변동의 주된 원인이 범행과 독립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
 - 증권·파생금융상품 시장을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48)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금융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손해배상청구 또는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 법인의 주요주주 혹은 대표이사 등 임원, 외부컨설팅업자 등으로서 관련 정보의 생성·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범행하거나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주식처분대금을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회사 부채 변제에 사용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단, 벌금형의 선고로 인하여 환수되는 이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아.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가 등을 부양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

- 권 방어 비용 확보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경우
-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비용 감소를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나 공시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관련 징계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의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범행의 대가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누락
 -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횡령 등)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범행
 - 유상증자 또는 은행대출 목적의 범행
 - 범행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을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¹ 금융범죄**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를 한 경우
 -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 증재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증재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수재 후 알선행위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01¹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¹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와 금융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실제 추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추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 지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징계 전력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금융기관 임원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증권
·
금융
범죄

2023.
7. 1.
수정시행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증재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극 가담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증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증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는,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시세조종행위로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012. 6. 18. 의결, 2012. 7. 1. 시행
2017. 4. 10. 수정, 2017. 5.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상표법 제230조), 저작재산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인격권 침해·부정등록행위·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저작권행사방해행위·침해간주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비밀 누설·도용행위(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5항),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휘장·표지 등 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등록권리침해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행위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를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권재산권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제2유형은 저작인격권 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행사 방해행위, 침해간주행위를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등록권리침해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상표법 제230조

02¹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2유형	1.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2. 부정등록행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제93조) 침해행위 3의3. 업 또는 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3의4. 업 또는 영리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4.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03¹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5항
제2유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지 식
재 산 권
범 죄

2023.
7. 1.
수정시행

04¹ 부정경쟁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 제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용 중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이 상품·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권리자의 매출 감소가 미미한 경우
 -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아동·장애인·노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제조된 물건 전부가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않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

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사.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한다.

자.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

한 경우

- 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여,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카.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 권리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에게 대가를 지급 받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2. 6. 18. 의결, 2012. 7. 1. 시행
2018. 6. 11. 수정, 2018. 8. 15. 시행
2022. 3. 28. 수정, 2022. 6.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8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은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 제3항),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중상해·특수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2항),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존속폭행치상(형법 제262조),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존속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상습특수중상해·상습특수중존속상해·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존속폭행(형법 제264조),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형법 제284조),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상습특수존속협박(형법 제285조),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누범폭행·누범존속폭행·누범협박·누범존속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누범특수폭행·누범특수존속폭행·누범특수협박·누범특수존속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보복목적 상해·보복목적

폭행·보복목적 협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보복목적 폭행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운전자 폭행·운전자 협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사·운전자 협박치상·운전자 협박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0월	4월 - 1년6월	6월 - 2년6월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1,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수상해·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특수상해 · 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2년 - 5년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8년
6	누범·특수폭행	2월 - 1년2월	4월 - 1년10월	6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경미한 상해(2,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2,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누범·특수협박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경미한 상해(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일반적인 상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상해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공동상해 · 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상습상해 · 상습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유형 중상해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
	상습중상해 · 상습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02 | 특수상해 · 누범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특수상해	특수상해 · 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상습특수상해 · 상습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유형 특수중상해 · 누범 상해	특수중상해 · 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상습특수중상해 · 상습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누범상해 · 누범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 · 누범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03¹ 폭행범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폭행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공동폭행 · 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상습폭행 · 상습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유형 폭행치상	폭행치상 ·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 특수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보복목적 폭행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운전자 폭행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수폭행 · 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1조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누범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누범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보복목적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04¹ 협박범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협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공동협박 · 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상습협박 · 상습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운전자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3유형 운전자 협박치사	운전자 협박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수협박 · 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상습특수협박, 상습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누범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누범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보복목적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4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 파목(가목, 라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기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카.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

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공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공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공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공정)사유와 일반공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공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공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2. 6. 18. 의결, 2012. 7. 1. 시행

2016. 3. 28. 수정, 2016. 5. 15. 시행

2020. 4. 20. 수정, 2020.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9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또는 도주 후 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10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7년	6년 - 12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2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2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₁₎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₂₎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₃₎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₁₎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₂₎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₃₎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₂₎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₂₎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₃₎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₂₎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₂₎	2년6월 - 4년 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₂₎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₂₎	1년6월 - 4년 ₄₎

- ▷₁₎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₂₎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₃₎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₄₎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범죄(1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정의]

01¹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1)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1)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2) 제2유형(위험운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후단

다. 어린이 교통사고

(1) 제1유형(어린이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2) 제2유형(어린이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02¹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03¹ 음주·무면허운전

가. 제1유형(무면허운전)

구성요건	적용법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나.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다.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라. 제4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마. 제5유형(음주측정거부)

구성요건	적용법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01 | 교통사고⁴⁹⁾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9)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운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라.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마.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

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차.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1, 2)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

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제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 음주 · 무면허운전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⁵⁰⁾

01¹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50) 금고형·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준임

02¹ 음주·무면허운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금고형·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2. 8. 20. 의결, 2012. 9. 1. 시행

2020. 1. 6. 수정, 2020. 2.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 선거범죄 양형기준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은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다만 제5항은 제외),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2조, 다만 제3항은 제외),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3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공직선거법 제235조),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위반(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행위(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다만 제4항, 제5항은 제외),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공직선거법 제257조, 다만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과 제3항은 제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경우도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 원 - 5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 원 - 1,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150만 원 - 2,0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 원 - 2,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1항)는 2유형에,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3유형에 포섭
- ▷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죄(제230조 제6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3배 가중
- ▷ 제2유형 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죄(제235조 제1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3로 감경
- ▷ 제3유형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로 감경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선거
범죄

2023.
7. 1.
수정시행

02¹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기부행위	50만 원 - 300만 원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진 사퇴, 불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 누범



03¹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6월 - 1년, 250만 원 - 400만 원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8월, 300만 원 - 600만 원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1년 - 3년

-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
-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기담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기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거운동기간 위반	3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2	선거운동방법 위반	5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200만 원	4월 - 1년, 100만 원 - 400만 원
3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3유형은 제외)(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유형의 정의]

01¹ 매수 및 이해유도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 권유· 요구· 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 권유· 요구· 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 권유· 요구· 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 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권유· 요구· 약속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선거범죄

2023. 7. 1. 수정시행

02¹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3¹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다.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선거일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 금지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양형인자의 정의]

01 | 매수 및 이해유도⁵¹⁾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

51)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제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의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다만,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로부터 선거인,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 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위한 용도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마.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에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협찬 내지 찬조,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의 범행인 경우

마.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제3자가 주도하는 모임 등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친분관계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¹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가.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공표된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제1유형은 제외)
- 토론회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 경우
-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이나 단순히 언론기사나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데 그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소수의 유권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
- 게시 기간이 극히 짧거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의 불륜, 성매수,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살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인터넷[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TV, 라디오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만, 인터넷의 경우 조회 수가 거의 없거나 게시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비공개 설정을 이용하는 등으로 게시자가 게시물의 전파가능 범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 악의적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가.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극히 적은 경우
- 설치한 유사기관의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 탈법배부한 문서 등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에 나아갔는데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법령해석을 잘못된 결과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거나 국민운동단체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 등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고하는 죄와 분리 선고하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매수 및 이해유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02¹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03¹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자수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1 조세범죄 양형기준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상습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5항),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특정범죄가중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 8월	6월 - 10월	8월 - 1년2월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2월	1년 - 2년
3	5억 원 이상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3유형에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지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¹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2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9년	8년 - 1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 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3¹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2월	1년 - 2년
3	50억 원 이상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 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4¹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300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5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 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¹ 일반 조세포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 조세포탈로서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본문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일반 조세포탈로서 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세액 등의 30/10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단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습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5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형의 1/2 가중

가. 제1유형 :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 정 형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가. 제1유형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3¹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 정 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위 행위의 알선·중개행위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가. 제1유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4¹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1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3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가. 제1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01 | 일반 조세포탈/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⁵²⁾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될 익금이나 손금의 확정시기의 조작 등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52)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3(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총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총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¹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¹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¹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일반 조세포탈 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조세포탈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 조세포탈 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명백한 경우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 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2018. 7. 23. 수정, 2018. 8. 15. 시행

2022. 3. 28. 수정, 2022. 6.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2 공갈범죄 양형기준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은 공갈(형법 제350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 2), 상습공갈(형법 제351조, 제350조), 상습특수공갈(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정경제범죄상 공갈(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차목)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2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3년	1년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특수공갈	6월 - 2년	10월 - 3년	2년 - 5년
2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10월 - 2년6월	1년4월 - 4년	3년 - 6년
3	누범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의 정도가 악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특수공갈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일반공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갈	형법 제350조
공동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 가. **제1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제5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
제2유형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누범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상습특수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제3유형 누범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차목, 파목(차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공갈의 정도가 악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 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제외)
 -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04 |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공갈 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공갈 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미합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공갈범죄

2023. 7. 1. 수정시행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3 방화범죄 양형기준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형법 제164조 제2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형법 제165조),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형법 제166조 제1항), 타인 소유 일반물건방화(형법 제167조 제1항), 문화재 방화(문화재보호법 제94조), 채종림 등 방화(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상 산림 방화(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일반물건방화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문화재 방화	2년6월 - 4년	3년 - 8년	6년 - 12년
2	산림 방화	3년 - 6년	5년 - 9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 - 9년	7년 - 13년	10년 - 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1유형)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 범행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4조 제1항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5조

나.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6조 제1항

다.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

02¹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가. 제1유형(문화재 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 방화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나. 제2유형(산림 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종림, 수형목, 시험림 방화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상 산림 방화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03¹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나.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다.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양형인자의 정의]

01 | 일반적 기준⁵³⁾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53)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인해 인근 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방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주거나 사업장에 방화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제3유형은 제외)

-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주유소 등의 방화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가.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제1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각 호의 건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이 우연히 해당 건조물을 방화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소실 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방화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한 방화
 - 국립공원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방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¹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가. 경미한 상해(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제2유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다.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중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상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4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배임수증재범죄의 양형기준은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형법 제357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배임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배임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증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배임수재

가.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배임증재

가. 제1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01 | 배임수재⁵⁴⁾

가.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54) 배임증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마.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후 수재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해 배임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로 인하여 학교, 언론사, 감정평가기관, 강제집행기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배임증재

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업무상 지시 또는 압력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수재자가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적극적 증재

- 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배임수재범죄와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배임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배임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증재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5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항),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0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변호
사법
위반
범죄

2023.
7. 1.
수정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5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¹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약속에 그친 경우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칭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¹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항

- 가. 제1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제5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변호사법 제110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 가. 제1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받기로 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01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⁵⁵⁾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의뢰인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경우
 - 채권을 양수하거나 고용관계 등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는 등으로 법률사무 취급을 적극 주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55)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02¹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가.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교제나 청탁·알선을 요구하며 금품, 향응 등의 이익을 제시하여 그 요구 및 제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수, 요구, 약속 또는 제3자 공여, 공여 약속을 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와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2¹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6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지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



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난 동기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은폐 시도(2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¹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가 편취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난 동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
 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1) 제1유형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위계·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폭력행위처벌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나.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3호

02¹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보호 또는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3)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임신, 성병, 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사.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자.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가장임차인,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¹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¹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¹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경우)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 등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성매매범죄

2023. 7. 1. 수정시행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4. 3. 31. 의결, 2014. 10. 1. 시행

2018. 7. 23. 수정, 2018. 8. 15. 시행

2022. 3. 28. 수정, 2022. 6.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7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은 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2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9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보복목적 체포·감금(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유기(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형법 제271조 제2항), 중유기(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형법 제271조 제4항), 영아유기(형법 제272조), 학대(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제2항), 유기치상·중유기치상·영아유기치상·학대치상(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존속유기치상·중존속유기치상·존속학대치상(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유기치사·중유기치사·영아유기치사·학대치사(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존속유기치사·중존속유기치사·존속학대치사(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학대(청소년 보호법 제57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이용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상습범(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누범체포·감금	6월 - 1년6월	10월 - 3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경미한 상해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2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경미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지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 치사 · 살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사체손괴(2, 3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사체유기(2, 3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체포· 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3유형 누범체포· 감금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 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02¹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2항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제2항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4항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학대	청소년보호법 제57조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상·중유기치상·영아유기치상·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존속유기치상·중존속유기치상·존속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사·중유기치사·영아유기치사·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존속유기치사·중존속유기치사·존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03¹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제2유형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3유형 매매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유형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호의 죄(제17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01 | 체포·감금⁵⁶⁾

가.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체포·감금 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체포·감금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결여
 -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감금하면서 감금장소 내에서의 신체적 활동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허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6) 유기·학대, 아동학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감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파.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하.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유기·학대⁵⁷⁾

가.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보호의무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병원·파출소·보호시설 등에 유기한 경우,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한 경우
 - 학대 :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57) 아동학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은 한 이와 같다.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 아동학대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체포·감금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상해·폭행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체포·감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유기·학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3¹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2015. 6. 8. 수정, 2015. 7. 1. 시행
2016. 7. 11. 수정, 2016. 9.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8 장물범죄 양형기준

장물범죄의 양형기준은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및 알선(형법 제 362조), 상습장물(형법 제363조), 누범장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 5항), 문화재 장물(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일반장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 ▷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수 개의 장물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장물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다만, 위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다른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물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 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자
물
범
죄

2023.
7. 1.
수정시행

02¹ 누범장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누범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일반장물

가.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장물범죄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장물범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장물범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죄

02 | 누범장물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나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장물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제2유형)

- 처음부터 대상 장물이 특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물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범행 과정에서 뒤늦게 특별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로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위 친족관계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친족관계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의 특별감경 행위인자를 적용할 뿐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장물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 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에 대한 장물 범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물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자.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대상 장물 또는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거.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너.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2018. 7. 23. 수정, 2018. 8.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9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강요(형법 제324조 제1항), 공동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중강요(형법 제326조), 특수강요(형법 제324조 제2항), 누범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점유강취(형법 제325조 제1항), 준점유강취(형법 제325조 제2항), 중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6조),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권리
행사
방해
범죄

2023.
7. 1.
수정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개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특수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누범강요	6월 - 1년6월	10월 - 3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단체 또는 다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요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3	중권리행사방해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4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개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강요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공동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제2유형 중·특수강요	중강요	형법 제326조
	특수강요	형법 제324조 제2항
제3유형 누범강요	누범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강요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02¹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제2유형 점유강취/준점유 강취	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1항
	준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2항
제3유형 중권리행사방해	중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6조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양형인자의 정의]

01 | 강요⁵⁸⁾

가.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 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

-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합의 강요)

58) 권리행사방해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강요된 행위의 내용,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권리행사방해 등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해품 자체의 가액보다 현저히 작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4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권리
행사
방해
범죄

2023.
7. 1.
수정시행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협에 처한 경우(1, 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 | 개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0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 경매·입찰방해(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업무방해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경매·입찰방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경매 · 입찰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 · 입찰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건설 입찰방해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업무방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02¹ 경매·입찰방해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형법 제315조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



[양형인자의 정의]

01 | 업무방해⁵⁹⁾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 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59) 경매·입찰방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사.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차.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경매·입찰방해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 저가낙찰,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업무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경매 · 입찰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2018. 7. 23. 수정, 2018. 8. 15. 시행

2022. 3. 28. 수정, 2022. 6.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1 손괴범죄 양형기준

손괴범죄의 양형기준은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7조), 중손괴(형법 제368조 제1항), 재물손괴 등 치상·공익건조물파괴치상(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재물손괴 등 치사·공익건조물파괴치사(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특수재물손괴 등(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9조 제2항), 공동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문화재손상 등(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문화재절도는 제외, 이하 같음), 문화재특수손상 등(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상(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사(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문화재건조물파괴(문화재보호법 제94조, 문화재건조물방화·일수는 제외, 이하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2조 제4호 카목),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카목)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3, 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유형)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손괴 등	- 8월	6월 - 1년2월	8월 - 2년
2	누범특수손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 2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 2유형)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 파괴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6월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 파괴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1, 3유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1, 2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3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인 범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1, 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재물·문서·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공동으로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나.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방화, 일수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다.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라.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02¹ 누범·특수손괴

가.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누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나. 제2유형(누범특수손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03¹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재물손괴 · 공익건조물파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 죄 ·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나. 제2유형(재물손괴 · 공익건조물파괴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 죄 ·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라.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 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카목, 파목(카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카목, 파목(카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손괴범죄

2023.
7. 1.
수정시행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하.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너.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재물손괴 등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 경미한 상해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5. 2. 2. 의결, 2015.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2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다만,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된 영리행위는 제외함),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전통소싸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47조, 형법 제248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사행성
·
게임물
범죄

2023.
7. 1.
수정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도박장소·공간 개설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¹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사경륜·경정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유사경마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유사스포츠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3¹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2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4¹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2	미등급 · 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키기구, 온라인 스포츠평토평 발행시스템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 유키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5¹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 | 도박장소 개설 등

가. 제1유형(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복표 발매	형법 제248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복표 발매 중개	형법 제248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복권 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다.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 목적 도박장소·공간 개설	형법 제24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02¹ 불법 스포츠도박 등

가. 제1유형(유사경륜·경정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승자투표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관련 영리행위(승자투표권 구매·주선·양도 등 행위 제외)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 시행	전통소싸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나. 제2유형(유사경마)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경마 시행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마사회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지급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외국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승마투표 또는 유사행위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3항 제2호	

다.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 이용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03¹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가.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전시·보관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다.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04¹ 불법게임물 등 유통

가.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전시·보관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평타 발행 시스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 이를 위한 제조·수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설계·제작·유통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05¹ 무허가·무등록 영업

가.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내용 등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하거나 환전·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목적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급, 베팅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게임물 이용자,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 도박 등 참가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행성 유키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단속 회피 시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CCTV 등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 사행성 영업이란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에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이란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에서 위와 같은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3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폭행의 금지),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강제근로),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제25조의2(강제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 제44조의2(도급·건설사업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 2호(퇴직급여 미지급), 파견법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 2, 3호(선박소유자의 임금 미지급), 제170조 제3호(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근로
기준법
위반
범죄

2023.
7. 1.
수정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임금 등 미지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강제근로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사용자가 폭행, 협박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폭행, 협박 등으로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제2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중간착취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 이익을 취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직업소개 등에 종사하는 자,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선원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이익을 취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¹ 임금 등 미지급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금품청산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미지급, 퇴직연금 급여 내지 부담금 등 미지급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파견법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미지급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 2, 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	선원법 제170조 제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제1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미지급 금액은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한 정도가 가벼운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임금,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수수한 금품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의 강제근로·중간착취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국적,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 피고인이 불법적인 청탁, 알선으로 취업, 모집, 채용을 하려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망행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를 강요한 경우
 - 취업, 근로자 모집, 채용에 관하여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악의적인 미지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임금 등 지급의무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과 임금 등 미지급 유형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 |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임금 등 미지급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4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석유사업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46조 제10호(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석 유
사업법
위 반
범 죄

2023.
7. 1.
수정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02¹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 판매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1유형)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¹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가. 제1유형(중소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은 제조·공급·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양으로서 여러 행위에 걸쳐 중복되는 수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음).

나. 제2유형(일반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대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0만 리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량미달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부피증가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양형인자의 정의]

01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⁶⁰⁾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소액의 운송료, 수수료 등을 받고 단순한 운송·저장·보관 등만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품에 가짜석유제품을 소량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차이가 크지 않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60)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원료공급행위를 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자. 단속 회피 시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합법적인 제조시설, 공장 등으로 위장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위의 요소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가.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판매량 또는 이득액이 매우 많은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등유 등을 경우 또는 적합한 연료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1유형, 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량 등을 합산한 용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과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¹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3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단속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1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용량·용도 위반 등 판매) ●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44조 제6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2021. 3. 29. 수정, 2021.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5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과 실
치사상
·
산업안
전보건
범 죄

2023.
7. 1.
수정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과실치사상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산업안전보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 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과실치사상 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7조
제2유형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제3유형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02¹ 산업안전보건 범죄

가. 제1유형(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도급인이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66조의2, 제63조



나. 제2유형(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업주가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66조의2,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

다. 제3유형(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 3항
사업주가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 또는 자신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63조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를 저지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과
실
치사상
·
산업안
전보건
법
죄

2023.
7. 1.
수정시행

[양형인자의 정의]

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산업안전보건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위 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자. 보험 가입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醜相) 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금고형·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7. 4. 10. 의결, 2017.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6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도주·범인은닉범죄의 양형기준은 도주(형법 제145조 제1항), 특수도주(형법 제146조), 도주원조(형법 제147조), 간수자의 도주원조(형법 제148조), 범인은닉(형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주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특수도주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3	도주원조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02¹ 범인은닉·도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범인은닉·도피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약속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유형의 정의]

01¹ 도주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	형법 제145조 제1항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한 자	형법 제146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형법 제147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	형법 제148조

02¹ 범인은닉·도피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형법 제151조



[양형인자의 정의]

01 | 도주⁶¹⁾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체포자, 간수자의 방임 등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61) 범인은닉·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범인은닉·도피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



에 이르게 된 경우

-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예: 불법게임장 등을 영업하면서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기로 정한 경우 등)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쉽게 허위진술임이 발견된 경우 등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주·범인 은닉 범죄

2023. 7. 1. 수정시행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 |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유형)

02 | 범인은닉·도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7. 4. 10. 의결, 2017.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7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 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통화의 위조 등(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 유가증권의 위조 등(형법 제214조 제1항,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형법 제215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형법 제217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5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통 화
유 가 증 권
부 정 수 표
단 속 법
위 반 범죄

2023.
7. 1.
수정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통화 위조·변조 등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02¹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수표 위조·변조	6월 - 1년	10월 - 2년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1년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허위 신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름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범행 후 도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통화 위조·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02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	형법 제214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 기재	형법 제215조
제214조 내지 제215조 기재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	형법 제217조

나.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03¹ 부정수표 발행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수표부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나. 제2유형(허위신고)

구성요건	적용법조
수표금액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양형인자의 정의]

01 | 통화 위조·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⁶²⁾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단순한 호기심에 극히 적은 통화, 유가증권을 위·변조한 경우
 - 위·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
 -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62) 부정수표 발행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바.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말한다.

사.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

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차.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 등을 행사한 경우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부정수표 발행 등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견질용, 보증용, 기존채무 담보, 선수금 등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제3자가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수표부도)
 - 거래처의 도산, 대금 미지급, 경기 침체, 업무상 배임 등 제3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수익 급감, 매출 부진, 자금회전 악화, 경영악화, 투자 실패 등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수표부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소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악의적인 미지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수표 회수 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수표소지인 등이 수표 부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도산하였거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다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 국내통화 위·변조, 유가증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나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01 | 통화 위조·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3¹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범행 후 도피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7. 4. 10. 의결, 2017.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8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등),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이자율 제한위반 등),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중개수수료 수령 등, 다만, 제11조의2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함),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폭행, 협박 등 행위),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다만, 제9조 제2, 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대부업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¹ 채권추심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2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 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대부업법위반

가.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02¹ 채권추심법위반

가.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나.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양형인자의 정의]

01¹ 대부업법위반⁶³⁾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인 경우
 -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부금액, 대부중개금액, 이자, 수수료, 수입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63) 채권추심법위반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채권추심법위반

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나.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추심액을 종전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거나 기타 추심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¹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¹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¹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01¹ 대부업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9. 3. 25. 의결, 2019. 7. 1. 시행

2022. 3. 28. 수정, 2022. 6.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39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군형법 제64조 제4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모욕(형법 제311조),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2조 제4호 사목),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사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 6월	4월 - 1년	6월 - 1년6월
2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8월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균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 모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 4월	2월 - 8월	4월 - 1년
2	상관 모욕	- 6월	4월 - 10월	6월 - 1년2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유형)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군형법 제64조 제4항

나. 제2유형(출판물등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02¹ 목

가. 제1유형(일반 모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나. 제2유형(상관 모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목, 파목(사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사목, 파목(사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01¹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⁶⁴⁾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 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허위사실과 함께 적시된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4) 모욕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라. 미필적 고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게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합성된 사진이나 조작된 SNS(Social Network Service) 대화내용을 첨부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카. 소극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02¹ 모욕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문의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계획적 범행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우발적 범행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 목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적 범행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에서 ‘순정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문).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9. 3. 25. 의결, 2019.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40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 사
수 신
행 위 법
위 반
범 죄

2023.
7. 1.
수정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크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수신크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비조직적 범행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

02¹ 조직적 범행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수신행위범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함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다.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매우 큰 경우
 -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다수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사.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아.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크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가담 ● 범죄로 인한 수신크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9. 3. 25. 의결, 2019.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전 자
금 용
거 래
법 위
반
범 죄

2023.
7. 1.
수정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2월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가담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01¹ 일반적 범행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02¹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다른 범죄(예를 들면 보이스포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함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다.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바.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20. 12. 7. 의결, 2021. 1.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4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 내지 5항, 7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각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지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등 중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5¹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 제1유형(제작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나. 제2유형(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다. 제3유형(배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라. 제4유형(아동·청소년 알선)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마. 제5유형(구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02¹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제1유형(촬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나. 제2유형(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라. 제4유형(소지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2, 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03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가. 제1유형(편집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나. 제2유형(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04¹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가. 제1유형(협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나. 제2유형(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05¹ 통신매체이용음란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양형인자의 정의]

0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⁶⁵⁾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5)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수입·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③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상영하거나, 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또는 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대상인 아동·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파.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③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¹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4 | 통신매체이용음란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02¹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4 |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21. 3. 29. 의결, 2021. 7. 1. 시행
2022. 3. 28. 수정, 2022. 6.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43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은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20조),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2조 제4호 아목),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아목)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3.
7. 1.
수정시행

주거
침입
범죄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퇴거불응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지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3유형)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등 중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 - 1년	8월 - 1년4월	1년2월 - 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1유형)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주거침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주거 등 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 등 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나. 제2유형(퇴거불응)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퇴거불응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다. 제3유형(주거·신체 수색)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형법 제321조

02¹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가. 제1유형(특수주거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	형법 제32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불응	형법 제320조

나. 제2유형(누범주거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주거 등 침입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퇴거불응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다. 제3유형(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폭력행위처벌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불응하여 누범으로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유형의 주거·신체 수색)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목, 파목(아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아목, 파목(아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곧바로 임의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다만,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로 인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인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절도 범죄 양형기준의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의 권고 형량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주거·신체 수색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21. 3. 29. 의결, 2021.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44 환경범죄 양형기준

2023.
7. 1.
수정시행

환
경
범
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 제63조 제1호(제8조⁶⁶)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버림), 제2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 제64조 제5호(제25조 제3항⁶⁷)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 제65조 제1호(제13조⁶⁸)를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 제66조 제1호(제13조 또는 제13조의2⁶⁹)를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제2호

6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68)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9)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제46조 제1항⁷⁰)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

[건설폐기물법]

- 제62조 제1호(제21조 제3항⁷¹)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 제63조 제1호(제13조 제1항⁷²)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대기환경보전법]

- 제89조 제1호(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⁷³)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2호(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⁷⁴)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70)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 71)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 72)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73)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74)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제3호(제31조 제1항 제1호나 제5호⁷⁵)에 해당하는 행위)

- 제90조 제1호(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2호(제31조 제1항 제2호⁷⁶)에 해당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 제75조 제1호[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⁷⁷]에 따른 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 제76조 제2호(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3호[사업자(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75)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본문 생략)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76)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본문 생략)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7)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⁷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77조 제1호[제15조 제1항⁷⁹⁾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림]
- 제78조 제2호(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 제3호(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림)

[해양환경관리법]

- 제126조 제1호(제22조 제1항 및 제2항⁸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배출)
- 제127조 제1호(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제2호(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78)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본문 생략)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79)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80)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 ②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 제128조 제1호(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 제128조 제1호(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가축분뇨법]

- 제48조 제1호(제11조⁸¹⁾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⁸²⁾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⁸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6호(제28조 제1항⁸⁴⁾에 따른

81)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단)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82)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3)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본문 생략)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49조 제1호(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제2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4호(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제10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50조 제3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제4호(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제5호(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6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⁸⁵⁾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84)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2023.
7. 1.
수정시행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9호(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제11호(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85)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023.
7. 1.
수정시행

02¹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3 | 1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4¹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5¹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위반죄(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3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023.
7. 1.
수정시행

[유형의 정의]

01¹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가. 제1유형(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나. 제2유형(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다. 제3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1호

라. 제4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폐기물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02¹ 대기환경 범죄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오염도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03¹ 물환경 범죄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②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③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다. 제3유형(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하거나 버림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라. 제4유형(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 버림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04¹ 해양환경 범죄

가. 제1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 유해물질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나. 제2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 물질 등 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다. 제3유형(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05¹ 가축분뇨 범죄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p>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②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③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④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 ⑤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줌, ⑥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함, ⑦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림, ⑧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배출(이하 위 ②에서 ⑧까지 7가지 행위를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이라 한다)</p>	<p><u>가축분뇨법 제48조 제1호</u></p>
<p>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p>	<p><u>가축분뇨법 제48조 제6호</u></p>

나. 제2유형(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49조 제4호

다. 제3유형(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6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가축분뇨법 제50조 제9호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11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1, 4)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2)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3 중 1, 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23. 4. 24. 의결, 2023. 7. 1. 시행

45 관세범죄 양형기준

관세범죄의 양형기준은 무신고 수입 등(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무신고 수출 등(관세법 제269조 제3항),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등(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부정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2항), 부정 수출(관세법 제270조 제3항), 부정 관세감면 등(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 관세환급(관세법 제270조 제5항), 밀수품 취득 등(관세법 제274조 제1항), 무신고 수입 등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무신고 수출 등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포탈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부정 수입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관세범죄의 집단범·상습범(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3.
7. 1.
시행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¹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3¹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3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3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부정 수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1유형)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4¹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¹ 관세포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세가격·관세를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 면탈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5항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 (1)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호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3¹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제2호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 (1)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1)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2) 제2유형(집단범 ·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04¹ 밀수품 취득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 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 · 감정	관세법 제274조 제1항

나. 제2유형(집단범 ·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양형인자의 정의]

01¹ 관세포탈⁸⁶⁾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 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관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관세법 제 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86) 무신고 수입 등, 무신고 수출 등, 밀수품 취득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또는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결정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자금 경색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2¹ 무신고 수입 등

가.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국가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자금 사정 등으로 원자재의 정상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 당시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던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벌금형 또는 몰수·추징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등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¹ 무신고 수출 등

가.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출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출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출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수출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국의 산업 또는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입국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수입국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4¹ 밀수품 취득 등

가.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밀수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밀수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밀수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밀수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밀수품 취득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밀수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 또는 수입국의 산업이나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에서 정한 금지품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 부정수출입죄)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밀수품 취득 등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밀수품 취득, 운반, 보관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 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관세포탈 범죄,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부정 수입 범죄,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부정 수출 범죄, 밀수

품 취득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¹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¹ 관세포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무신고 수입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3¹ 무신고 수출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4¹ 밀수품 취득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23. 4. 24. 의결, 2023. 7. 1. 시행

46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은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정보통신망 침입 등(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개인정보 무단이용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신용정보 누설 등(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신용정보 무단 이용 등(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통신비밀 침해 등(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3.
7. 1.
시행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4월 - 1년	6월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피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범죄로 인한 유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03¹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개인정보 · 신용정보 · 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피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나.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02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제2유형(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03¹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나. 제2유형(개인정보 · 신용정보 · 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 ·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 위치정보를 누설 · 변조 · 훼손 또는 공개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

다.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양형인자의 정의]

01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⁸⁷⁾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 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보통신망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87)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1유형)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나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1유형)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1유형)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융통액이 매우 큰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자금을 융통하여 준 상대방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¹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정보주체의 정보가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죄로 인한 유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포심 · 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3¹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The background features a light gray gradient with abstract white and light gray elements. In the top-left corner, there is a cluster of overlapping circles of various sizes. The bottom half of the page is dominated by several thick, wavy, horizontal lines that create a sense of movement. Scattered throughout are several more circles of different diameters, some overlapping the wavy lines.

양형기준 해설

I. 서론

01 | 양형기준의 의의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02 |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1. 물적 범위

양형기준은 구약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만 적용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거범죄, 교통범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또는 징역형과 병행하여 제시하거나, 벌금형 선택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지침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살인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형인자표에서 대부

분의 공통되는 특별가중인자로 형법 제34조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규정하고 있고, 위증죄에서는 일반가중인자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에서 양형기준이 교사범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인적 범위

양형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한다. 소년법에 대하여 성인범과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소년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소년법 제2조), 결국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3. 시적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그 이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형을 양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대상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나 양형기준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된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형기준이 개정 후 법정형과 양형실무를 반영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03¹ 양형기준의 효력

1. 권고적 효력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양형기준은 합리적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마련되었고,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이 경우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적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양형기준은 제1심 법관은 물론 항소심 법관도 참작하여야 하지만, 제1심 판결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여야만 적정한 양형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1심 양형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양형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2. 양형기준의 적용과 양형이유의 기재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된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한 다음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어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 어느 쪽도 권고되지 않는 경우(실형과 집행유예 중에서 선택 가능)를 구분하고 있는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법관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형기준이 모든 사례에 예외 없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양형기준 설정 시 반영하지 못한 고려 사유가 있

거나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나 참작사유와는 다른 평가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은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사유의 존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권고 형량범위에 속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①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권고됨에도 가중영역을 선택할 경우, ②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권고됨에도 실형을 선택할 경우, ③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권고됨에도 기본영역을 선택할 경우, ④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됨에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①과 ④ 또는 ②와 ③ 등과 같이 상호간에 중첩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산출된 형량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에서 전자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가중인자를 행위인자-특별감경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으로써 일반적인 양형인자 평가원칙에 따르지 않고 권고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특별양형인자로 평가하여 권고 영역을 정하는 경우 등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II. 양형기준의 적용

01 | 양형기준의 적용대상

1. 범죄군의 분류기준

가. 범죄군 분류의 기본원칙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유사한 범죄군을 통합하고, 그 범죄군 내에서 다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동일한 장에 속하는 범죄를 토대로,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개별구성요건과 범죄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같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범죄들을 하나의 범

죄군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당해 범죄가 어느 범죄군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범죄군은 기본적으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 따른 범죄 분류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은 구분이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성범죄의 경우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중심으로 각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되 유사한 성격의 강도강간죄(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와 형사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균형법 상의 성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단일 범죄군내의 유형 분류

또한 범죄군별로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범죄군마다 하나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만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일 범죄군내에서도 유형 분류에 따라 수개의 독립된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제시되기도 한다.

성범죄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 기준의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균형법상 성범죄)
-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균형법상 성범죄)
-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등에 대한 일곱 가지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제시되었다.

2.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의 선정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사 뿐만 아니라 범죄의 발생빈도 및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형 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였다.

양형위원회	설정대상 범죄군
제1기	살인범죄군, 뇌물범죄군, 성범죄군, 강도범죄군, 횡령·배임범죄군, 위증범죄군, 무고범죄군
제2기	약취·유인범죄군, 사기범죄군, 절도범죄군, 공문서범죄군, 사문서범죄군,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식품·보건범죄군, 마약범죄군
제3기	증권·금융범죄군, 지식재산권범죄군, 폭력범죄군, 교통범죄군, 선거범죄군, 조세범죄군, 공갈범죄군, 방화범죄군
제4기	배임수증재범죄군,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성매매범죄군,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장물범죄군, 권리행사방해범죄군, 업무방해범죄군, 손괴범죄군,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제5기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석유사업법위반범죄군, 과실치사상범죄군, 도주·범인은닉범죄군, 통화·유기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군,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군
제6기	명예훼손범죄군,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군
제7기	디지털 성범죄군, 주거침입범죄군, 환경범죄군
제8기	관세범죄군,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군, 교통범죄 벌금형

3. 적용 대상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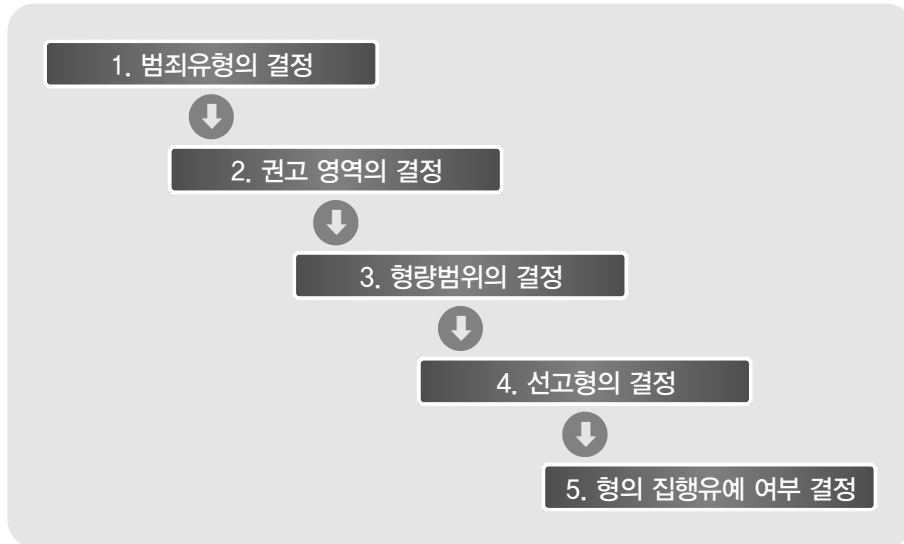
동일 범죄군에 속하는 모든 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 범죄군에 속하는 개별 범죄 중에서도 일정 범위의 범죄만을 양형기준의 우선 적용 대상범죄로 선정하였다.

- ① 양형기준 시행 초기부터 특정 범죄군에 속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현실적 제약
- ②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범죄의 경우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의 곤란
- ③ 주된 선고형이 벌금형 이하인 경우 등

따라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려면 당해 범죄가 속한 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죄군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02¹ 양형기준의 적용방법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1. 범죄유형의 결정

당해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그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은 각 유형에 관하여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을 결정하면 된다.

2. 권고 영역의 결정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특별 양형인자의 준부를 확인하여 이를 비교·평가한 후에 감경, 기본, 가중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3. 형량범위의 결정

권고 영역이 결정되면 각 형종 및 형량 기준표에서 제시된 구간을 형량범위의 기본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형량범위가 결정된다.

가. 특별조정

특별양형인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조정이란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가 일방만 복수로 존재하거나 어느 한 쪽이 복수로 많은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감경하거나 상한을 가중하는 것이다.

나. 서술식 양형기준

특정범죄군은 그 필요성에 의하여 서술식 양형기준을 추가하였다. 서술식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표나 양형인자표 하단에 ▷ 표시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몇 배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법률상 처단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 조정을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법상으로는 형량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이러한 요소들의 일부를 양형인자로 반영하였다. 경합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상의 경합범가중 규정과 구별되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량범위가 결정되면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하면 된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일반양형인자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정해지면, 법관은 그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함께 집행유예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참작사유를 비교하여 일정한 경우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Ⅲ. 형종 및 형량 기준

01 | 범죄유형 결정

1. 범죄유형 분류

가.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양형기준은 동일한 범죄군에 속한 범죄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정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이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범죄유형 분류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들은 동일하게, 유사하지 않은 범죄들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양형기준의 단순성을 추구하면서도 개별 범죄의 특성을 양형기준에 반영시키고, 범죄유형별 권고 형량을 합리적인 범위로 세분화함으로써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범죄유형 간에도 형량범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위 유형에 속하는 사안이 하위 유형에 속하는 사안보다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유사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할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책임의 경중을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유형 분류 자체가 어느 정도 양형지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범죄유형 분류의 원칙

양형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범위를 제시

하는 대신 범죄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형사실체법상의 구성요건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함과 동시에 가능한 처단형의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양형기준이 이를 참조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된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형기준으로서의 개별 구성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유형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살인범죄에 있어서는 범행동기와 수법이 극히 다양하여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죄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부터 극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할 사안까지 넓게 분포한다. 양형기준이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형량범위를 제시하려면 살인죄라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한 범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죄를 범행의 동기에 따라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과는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범죄행위의 특성이 유사하거나 권고 형량범위가 비슷한 여러 구성요건을 묶는 방식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우리나라 형사실체법상 구성요건 규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다양한 살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은 반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내용, 범행대상, 범행방법, 결합범 여부, 결과적 가중범 여부 등에 따라 구성요건을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있다. 결국 성범죄 양형기준은 입법자에 의해 이미 세분화된 다양한 구성요건들을 징역형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등 책임의 경중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 범죄유형 분류의 기준

모든 범죄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유형 분류의 원칙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군별 유형 분류의 기준은 범죄군에 따라 범행동기 및 목적, 범행수단, 행위태양, 피해자의 연령,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 상습성, 전과, 이득액 등으로 다양하게 개별화되어 있다. 양형기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유형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다양한 분류기준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군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특별구성요건이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가중·감경요소로 참작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유형 분류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이 유력한 양형요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적인 양형기준에 적용될 만한 일관성 있는 분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보다 중요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범죄유형 결정

구체적 범죄의 양형 과정에서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참고하기 위해 먼저 범죄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인범죄 양형기준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부터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까지 5개의 유형이 있다. 그러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구체적 살인범죄가 5개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마다 [유형의 정의]를 두어 각 유형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기술하고 있다. 양형기준상의 [유형의 정의]를 참고하여 범죄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라도 의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때에는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에 해당하여 제2유형의 보통 동기 살인이 되나,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를 살해한 때에는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에 해당하여 제3유형의 비난 동기 살인이 된다.

02¹ 권고 영역 결정

1. 양형인자의 구분

양형인자는 ① 다양한 양형인자의 기본적인 성격(행위인자, 행위자인자/기타인자), ②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가중인자, 감경인자), ③ 그 정도(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에 따라 구분된다.

양형인자를 수치화, 계량화할 경우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반

면, 다양한 양형인자들을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을 뿐만 아니라 양형 결정 과정이 획일화됨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인자들을 구분함으로써 양형인자를 수치화 또는 계량화하지 않으면서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양형의 객관적 논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먼저 감경인자와 가중인자로 구분한 다음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고 이를 다시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로 세분하고 있다.

가.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먼저, 양형인자는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로 구분된다. 가중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자를 말하고, 감경인자는 그와 반대로 책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자를 말한다.

양형위원회는 과거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에 기초하면서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거쳐 법관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를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나.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양형인자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특별양형인자는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를 말한다. 일반양형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양형인자에 미치지 못하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결정된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를 말한다.

예컨대, 특별가중인자가 1개 존재하고 일반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특별양형인자만을 기준으로 가중영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특별양형인자만이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어떤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양형위원회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입법자의 의사, 국민의 양형

에 대한 인식, 양형정책적 고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추출하였다.

다만, 범죄군별로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이상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별이 모든 범죄군에서 절대적일 수는 없으므로 어떤 범죄군에서 특별양형인자로 취급된 양형요소가 다른 범죄군에서는 일반양형인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닌데, 그로 인한 문제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고 영역간 형량범위의 중첩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였다.

다.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

양형인자는 다시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로 구분된다. 뒤에서 보는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 따르면, 같은 특별양형인자 상호간에는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양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행위인자를 다른 인자보다 우월하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범죄행위 자체에 관련되는 요소를 행위인자로, 범죄행위가 아닌 피고인 자신에 관련되는 요소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되는 요소 등을 행위자/기타인자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계획적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등은 행위인자로, 처벌불원, 자수, 상당 금액 공탁, 전과 등은 행위자/기타인자로 분류하였다. 다만,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라. 양형인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어떠한 특별양형인자 못지 않게 중요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양형인자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배제한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의 형량범위가 당해 사안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법관은 그러한 양형요소의 존재를 이유로 양형기준을 벗어난 양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양형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하고 전형적

인 양형요소가 있을 경우 양형기준을 개정하여 그것을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일반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요소와는 달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고려하는 요소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이 일반양형인자를 예시한 이유는 해당 범죄유형의 전형적인 양형인자가 양형심리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인자에 관한 공방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양형인자에 대한 법관의 종합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 법률상 가중·감경사유인 양형인자와 정상참작감경사유인 양형인자

형법은 양형인자를 법률상 가중·감경사유와 정상참작감경사유로 구분하고 있지만 양형기준은 그와 같은 구분에 따라 양형인자의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즉, 법률상 가중·감경사유와 특별양형인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가중·감경사유가 중요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 범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다 중요한 양형요소가 법률상 가중·감경사유가 아닌 정상참작감경사유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 가중·감경사유인 양형인자가 모두 특별양형인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양형인자 중에는 정상참작감경사유인 양형인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2. 양형인자의 존부 확정

양형기준은 범죄군과 범죄유형에 따라 양형인자를 구분해 놓았고,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권고 영역에 따른 형량범위가 산출되며,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양형인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권고 영역 및 형량범위 결정, 나아가 선고형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특히, 권고 영역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당해 사건에서 특별양형인자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적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법관은 충분한 양형심리를 통해 양형자료를 조사·평가하여 양형인자의 존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양형심리를 통해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양형인자의 평가를 통해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게 된다.

양형인자의 개수 산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양형인자표상 “●”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개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 내에 여러 가지 인자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한 개의 양형인자로 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특별양형인자 중 하나인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의 경우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양형인자는 2개가 아닌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양형인자의 평가 원칙

가. 양형인자 평가원칙의 필요성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양형기준이 양형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서 수리적으로 답이 도출되는 기계적인 평가원칙까지는 수립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리적인 형량범위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원칙을 수립할 것이 요청된다.

나. 양형인자 평가원칙의 개요

먼저 특별양형인자는 일반양형인자에 비하여 양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인자로서 일반양형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양형인자는 3단계 권고 영역 자체를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한 반면,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양자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역할을 구분하였다.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은 복수 특별양형인자 평가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복수 특별양형인자(살인범죄 양형기준)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행위인자 우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성격의 특별양형인자 동등 원칙’이다.

즉, 양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취급하고, 같은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같은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에는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를 동등하게 보아 개수를 기준으로 상쇄되도록 하였다.

다만, 살인,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에 있어서는 행위자/기타인자 중 피해자 또는 유족의 ‘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형인자를 수치화 또는 계량화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평가원칙에 의하여 모든 사안의 형량범위가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행위인자 우월 원칙의 적용 결과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가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낮아지는 권고형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복수 특별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합리적인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양형을 담당하는 법관이 다양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형량범위를 정하게 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동등한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다. 양형인자 평가원칙의 구체적 적용방법

양형인자 평가원칙에 의하면, 특별감경인자가 많거나 중할 경우에는 감경영역이, 특별가중인자가 많거나 중할 경우에는 가중영역이 권고된다.

또한, 행위인자 우월 원칙에 따라 동수의 행위인자인 특별감경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인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영역이, 동수의 행위인자인 특별가중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인 특별감경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영역이 권고된다.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가 모두 없는 경우, 양자가 동수이고 그 성격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영역이 권고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위인자-특별감경인자’와 ‘행위인자-특별가중인자’의 수를 비교하여 서로 상쇄하고 남은 특별양형인자의 수를 구하고,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감경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가중인자’의 수를 비교하여 서로 상쇄하고 남은 특별양형인자의 수를 구한다.

그후, 남은 특별양형인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남은 특별양형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영역이 권고된다.

② 남은 특별양형인자에 가중인자와 감경인자가 섞여 있지 않을 경우의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다.

남은 특별양형인자가 가중인자일 때에는 가중영역이 권고되고, 남은 특별양형인자가 감경인자일 때에는 감경영역이 권고된다.

유의할 부분은, 뒤에서 보는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에 따라 남은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감경영역 하한의 1/2을 낮춘 것이 권고 형량범위가 되고, 남은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높인 것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감경영역이 ‘2년 - 4년’이고 남은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년 - 4년’이 권고 형량범위가 되고, 가중영역이 ‘4년 - 6년’이고 남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4년 - 9년’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이 경우 남은 특별양형인자가 행위인자인지, 행위자/기타인자인지는 불문한다.

③ 남은 특별양형인자에 가중인자와 감경인자가 섞여 있을 경우의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다.

i) ‘행위인자-특별감경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위인자-특별감경인자’가 많거나 동수일 때 감경영역이 권고된다.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에는 행위인자가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행위인자-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영역 하한의 1/2을 낮추어 형량범위를 정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ii) 반면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가중인자’가 많을 때에는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중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권고 영역이 된다.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가중인자’의 수가 2개 이상 많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가중영역이 권고되거나 그 권고 영역 상한의 1/2을 높여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도 아니다.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감경인자’와 ‘행위인자-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권고 영역을 정한다. 즉 ‘행위인자-특별가중인자’가 많거나 동수일 때에는 가중영역이 권고되고,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감경인자’가 많을 때에는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영역을 정한다.

특별양형인자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형량범위 결정 사례]

(1) 제1사례

구분	감경	가중
행위	피해자 유발(강함)	존속인 피해자
행위자/기타		

- 위 사례의 경우 행위인자인 특별가중인자와 행위인자인 특별감경인자가 각각 1개씩 존재하고, 같은 성격의 특별양형인자 동등 원칙에 의하여 같은 행위인자인 '피해자 유발(강함)'과 '존속인 피해자'가 상쇄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

(2) 제2사례

구분	감경	가중
행위		존속인 피해자
행위자/기타	자수	

- 위 사례의 경우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가 각각 1개 존재하나, 행위책임 원칙에 의하여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행위인자인 '존속인 피해자'를 보다 중하게 고려하여 가중영역을 선택
- 만약 위 사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자수'가 아닌 '처벌불완'이 존재하고, 해당 기준에서 피해회복을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처벌불완'을 행위인자와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중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을 선택

(3) 제3사례

구분	감경	가중
행위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계획적 살인 범행
행위자/기타		특정강력범죄(누범)

- 위 사례의 경우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가 각각 2개 존재하나, 행위인자인 '과잉방위(또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계획적 살인 범행'은 상쇄되고, 남은 인자인 '미필적 살인의 고의(또는 과잉방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의 경우 행위책임 원칙에 의하여 행위인자인 전자가 중하게 고려되므로 감경영역을 선택

특별양형인자의 개수가 상이한 경우

(1) 제1사례

구분	감경	가중
행위	피해자 유발(강함)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반성 없음

- 위 사례의 경우 행위자/기타인자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과 '반성 없음'은 상쇄되나, '피해자 유발(강함)'이 특별감경인자로 남아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
 - ☞ 행위책임 원칙에 의하여 행위인자인 '피해자 유발(강함)'을 행위자/기타인자인 '반성 없음'보다 중하게 고려하고, 여기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추가로 존재하여 감경영역을 선택하였다는 설명도 가능

(2) 제2사례

구분	감경	가중
행위		계획적 살인 범행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자수	

- 위 사례의 경우 행위인자인 '계획적 살인 범행'은 행위자/기타인자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또는 '자수'와 비교하여 개별적으로는 중하게 고려되나, 행위자/기타인자가 행위인자보다 많아 평가원칙만으로는 바로 3단계 형량범위 중 특정 영역이 결정되지 않음
- 이 경우 법관은 특별양형인자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단계 형량범위 중 특정 영역을 결정

03 | 형량범위 결정

1. 형량범위의 결정 과정

양형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의 결정은 각 유형별로 제시된 3단계 권고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① 양형인자의 존부 확정 → ② 복수 특별양형인자의 평가 → ③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및 서술식 기준 적용 →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형사실체법에 따른 처단형의 도출 과정과는 다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관계에 따른 형량범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형량범위의 설정 근거 및 내용

가. 형량범위의 설정 근거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형위원회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중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였다. 다만,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를 설정할 때 적절한 규범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나. 권고 영역과 형량범위

양형기준은 범죄군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상응하는 일정한 형량범위를 부여하였다. 예컨대, 살인범죄군의 제1유형에 속한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 8년’이라는 형량범위가 제시된다.

이와 같이 유형 분류만으로도 형량범위가 전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일정한 구간으로 제한되지만, 양형기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의 형량범위를 다시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이라는 3단계 권고 영역으로 나눈 다음 각 사안별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 3단계 권고 영역 중 적절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다. 형량범위의 중첩

1) 개념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형량범위는 같은 범죄유형 내의 3단계 권고 영역 사이에서 중첩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양형인자의 존부 확인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범죄유형별 권고 영역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므로 양형기준의 객관성이 증대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각 사안별로 존재하는 특별양형인자의 중대성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형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은 권고 영역 사이에 형량범위가 일정 부분 중첩되도록 하고 있다.

2) 권고 영역 사이의 형량범위의 중첩

권고 영역 사이의 형량범위의 중첩은 특별양형인자만으로 권고 영역을 결정함으로 인한 불합리, 나아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엄격한 구별이 곤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양형인자 상호간의 영향력이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범죄유형 사이의 형량범위의 중첩

권고 영역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유형 사이에서도 형량범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된 양형요소 하나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3.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가. 개념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 일방만 복수로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복수로 많은 경우(반대의 경우도 동일)에도 양형기준의 준수율을 높이고 보다 적절한 양형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원칙에 따라 그 하한을 감경하거나 그 상한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량범위를 특별 조정한 결과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나. 방식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다. 사례 (일반사기)

구분	감경	가중
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동종 누범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소유형 1) 유형의 가중영역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이나, 위 사례의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2개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2년 6월 + (2년 6월 × 1/2)]

4. 서술식 양형기준

가. 개념

살인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등의 양형기준에서는 통상의 형량 기준 이외에 별도의 서술식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살인미수죄의 형량 기준을 살인기수죄의 형량범위보다 일정 비율로 감경하여 산출하거나, 성범죄, 강도범죄 등에서 특정강력범죄(누범)이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서술식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범죄에 해당하는지, 관련된 양형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면 서술식 기준을 적용하여 범죄유형을 분류하거나 형량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서술식 기준에 의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가중한 결과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나. 사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청소년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 성년 유사강간은 위 서술식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영역이 1년8월(= 2년6월 × 2/3) ~ 3년4월(= 5년 × 2/3)이 됨

5.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불일치 조정

가.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1) 적용 방식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따라야 한다. 즉,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기준이 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그와 달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낮은 경우 또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제시되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다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사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인 양형인자

1)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반영 필요성

양형인자가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를 들어,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수) 양형의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인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률상 감경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면 형법상 필요적 감경사유와 임의적 감경사유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그렇다고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감경 여부를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게 되면 재판부별로 양형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국 양형위원회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인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서 고려하되, 만일 법정형을 감경하지 않으면 권고 형량범위가 포섭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하였다. 따라서 양형기준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인 양형인자가 존재하고 그것이 반영된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정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사유 또는 정상참작감경사유 중 어느 한 가지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사례 (자수한 경우) ⇨ 자수를 법률상 감경사유 또는 정상참작감경사유로 고려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 자수를 법률상 감경사유 또는 정상참작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04¹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결정

1. 경합범 가중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경합범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은 형법 총칙과 다른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총칙에 따른 처단형 산출과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산출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형법 총칙은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정상참작감경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양형기준은 단일범을 기준으로 법률상 필요적 가중·감경사유는 물론 임의적 감경사유와 정상참작감경사유까지 모두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권고영역을 정한 다음 경합범 처리를 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또한 형법 총칙에 따른 경합범 가중은 경합범에 있어서 가능한 형량범위의 한계를 정한다는 목적을 가지지만, 양형기준에 있어서의 경합범 처리는 개별 경합범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를 제시해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결국 형법 총칙과 같이 기본범죄 형량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는 양형기준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므로 양형기준은 형법 총칙과는

다른 처리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형법 총칙의 경합범 기중방식과 구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형법 총칙에 따른 처단형 산출과정

법정형 → (형종 선택) → 누범기중 → 법률상 필요적 기중·감경 → 법률상 임의적 감경
→ **경합범 기중** → 정상참작감경 → 처단형의 범위 결정 → 선고형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산출과정

범죄유형의 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및 형량범위의 결정(법률상 필요적 기중·감경사유, 임의적 감경사유 및 정상참작감경사유의 반영)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선고형 결정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개요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기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처리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하한의 특칙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범위

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기본적으로 경합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물론, 일부 범죄에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조차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합범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실무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의 중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이 완료되어 경합범 전체의 처벌수준이 양형기준 설정 범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별도로 기소된 경우보다 낮게 처벌됨으로 인한 양형의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중죄를 중심으로 한 양형기준의 적용효과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리방식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기본범죄가 되거나 형사책임이 더 무거운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와 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경합범죄를 기본범죄 양형기준에 있어 하나의 양형인자로 반영하기도 하였다.

경합범죄를 양형인자로 반영한 사례

사례 1) 살인범죄 특별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체손괴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행위자/기타		

사례 2) 사문서범죄 일반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사례 3) 사기범죄 특별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양형인자의 정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그리고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도 충분한 양형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며,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선고형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상상적 경합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4. 다수범죄 처리 순서

가.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에서 출발하여 형종 선택, 법률상 기중·감경을 거친 이후의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범죄가 된다는 점에서 형법 총칙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예외를 둔 이유는 경합범 전체의 형량범위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높은 단일범의 형량범위보다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제1유형 감경영역(3년 - 5년)이 권고되는 존속살해죄와 제2유형 기본영역(10년 - 16년)이 권고되는 일반살인죄가 경합하는 사례를 상정해 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한다고 할 때 일반살인죄를 기본범죄로 보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최종 형량범위는 ‘10년 - 18년6월’[일반살인죄 제2유형 기본영역(10년-16년) + 존속살해죄 제1유형 감경영역 상한 5년의 1/2을 합산하여 18년6월]이 된다. 반면, 존속살해죄를 기본범죄로 보면 그 최종 형량범위는 ‘10년 - 13년’[존속살해죄 제1유형 감경영역의 하한(3년)보다 일반살인죄 제2유형 기본영역의 하한(10년)이 높으므로 하한은 10년이며, 상한은 존속살해죄 제1유형 감경영역 상한 5년 + 일반살인죄 제2유형 기본영역 상한 16년의 1/2인 8년을 합산하여 13년]이 된다. 이처럼 형법 총칙상의 경합범 가중에 있어서와 같이 존속살해죄를 기본범죄로 보게 되면 다수범 전체의 형량범위가 다수범의 일부를 이루는 일반살인죄의 형량범위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높은 일반살인죄를

기본범죄로 보는 것이 실무 감각에도 부합하고 상대적으로 적정한 형량범위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모두 고려하면, 기본범죄는 결과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범죄가 된다.

나. 다수범죄의 형량범위 산출

양형기준은 형법 총칙의 경합범 가중과 마찬가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만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한의 가중방법은 형법 총칙과 달리 다수범이 2개인지, 3개 이상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합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기본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로 선택
- ② 2개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③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 ④ 결과적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가중될 수 있는 최대값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5/6

5. 특정 범죄군에 있어서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특칙

범죄로 인한 이득이나 피해의 액수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형종 및 유형을 분류하는 뇌물범죄, 횡령·배임범죄, 사기범죄, 식품·보건범죄, 증권·금융범죄, 조세범죄, 공갈범죄, 배임수증재범죄, 변호사법위반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관세범죄에 있어서는 동종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을 두고 있다.

양형기준은 동종경합범의 경우에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액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하도록 하되,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상향되지 않도록 하한을 특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합산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합산 후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하고,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하한을 1/2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한편, 동종경합범과 이종경합범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다수범죄가중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원칙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 하한의 특별 조정

다만, 합산 결과 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②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하한의 특칙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먼저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

05¹ 선고형의 결정

단일범의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경합범의 경우에는 단일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 내에서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양형인자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형 요소 중 당해 사건의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양형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더라도 일반양형인자로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법관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 하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는 선고형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양형을 담당하는 법관은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여 당해 사건에서 가장 적합한 형을 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V. 집행유예 기준

01¹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입법자가 책임의 경중을 예방영역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종 및 형량 기준을 통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가 권고되는 영역에서는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결과가 된다.

02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구분

1. 집행유예 참작사유 구분의 의미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도 구분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그와 반대로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한 다음,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서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로 구분하고, ③ 다시 주요참작사유 또는 일반참작사유 내에서 재범의 위험성 등 관련 요소와 기타 요소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재범의 위험성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와 통계분석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이 객관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재범의 위험성 관련 요소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마찬가지로 범죄군별로 개별적으로 제시된다. 다만, 같은 범죄군 내에서 양형인자표는 여러 개로 나뉘어 제시되더라도 집행유예 참작사유표는 하나로 통합되어 제시될 수도 있다. 예컨대, 성범죄군에서 양형인자표는 일반적 기준의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장애인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균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등에 관하여 여섯 가지가 제시되지만 집행유예 참작사유표는 하나만이 제시되었다.

2.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는 집행유예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직접적으로 실형을 권고하거나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반면, 일반참작사유는 그 자체만으로는 실형을 권고하거나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참작사유에 의하여 실형이 권고되거나 집행유예가 권고될 경우에 이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비록 일반참작사유가 위와 같은 소극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형실무상 법관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요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군 또는 범죄유형에 속한 범죄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참작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3.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형량 결정 과정에서는 기본영역이 존재하는 관계로 특정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부존재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만을 가중요소 또는 감경요소

로 삼을 수 있다. 특정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감경요소로 선정한 경우라면 그것이 부존재하는 경우는 기본영역이 될 뿐이다. 예를 들어,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선정하였음에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다시 특별가중요소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특별가중요소로 삼게 되면 위 양형인자와의 관계에서는 기본영역이 부정되는 결과가 되고 기본영역 없이 감경영역과 가중영역 중에서만 택일하는 방식으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형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그와 다르다. 연속하는 여러 형량 영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형량 결정과는 달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집행유예와 실형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 여지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기준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형 권고, 집행유예 권고, 선택 가능 등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량 기준은 기본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양형인자의 존부에 따라 감경영역, 가중영역이 선택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집행유예 기준은 선택 가능성이 기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참작사유에 따라 실형 권고와 집행유예 권고 여부를 판단한 다음 어느 쪽도 권고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 가능성이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정방식 자체가 다르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는 어떤 참작사유의 존재를 부정요소(또는 긍정요소)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존재를 긍정요소(또는 부정요소)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의 양형인자와 다르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이라는 요소의 존재를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삼으면서 동시에 처벌불원이라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설정할 수 있다.

03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필요성

양형기준은 양형인자에 관한 평가원칙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관한 평가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개요

먼저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에 비하여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큰 요소이므로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된다.

나아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대한 권고 기준은 주요참작사유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설정하였는데, 형량 기준과는 다소 다른 평가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는 형량 기준과는 달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 택일적 선택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제2유형 살인범죄의 형량범위는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각 영역이 일부 중첩됨으로써 개별 양형인자의 지나친 영향력을 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가능하게 한다.

7	10	12	15	16	무기
감경	감경/기본	기본	기본/가중	가중	

집행유예 기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량 범위의 중첩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집행유예	?	실형/ 집행유예	?	실형
------	---	-------------	---	----

위 표에서 ‘?’에 해당하는 구간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 하나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개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뿐 아니라 형량 기준과는 달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참작사유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남아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편차가 큰 양형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에 해당하는 구간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관련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에서만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권고를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집행유예	실형/집행유예	실형
------	---------	----

그 결과 주요참작사유에 있어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가 복수로 차이나고, 일반참작사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차이를 희석시켜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권고하는 아래와 같은 평가원칙이 수립되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금고형·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구체적 적용방법

집행유예 기준은 참작사유를 활용하여 실형 권고, 집행유예 권고, 선택 가능한 세 가지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평가한 결과 실형이 권고되거나 집행유예가 권고되지 않으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택할 수 있다. 집행유예 기준에는 형량범위표와 같은 권고 결과를 표시하는 별도의 표는 없으나 참작사유표를 이용하여 실형 권고, 집행유예 권고, 선택 가능한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권고되는지 여부는 주요참작사유만으로 개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이 권고된다.

실형과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

저,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개수가 동일하거나 1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때에는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사유 또는 부정사유의 어느 일방이 2개 이상 차이 나도록 많은 경우에도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을 때에는 역시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유예 여부 결정 사례]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1) 제1사례(살인미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 위 사례의 경우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고, 일반긍정사유도 1개에 불과하므로 실형을 권고

(2) 제2사례(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위 사례의 경우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고, 일반긍정사유도 1개에 불과하므로 실형을 권고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

(1) 제1사례(살인미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계획적 살인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범행 후 구호 후송

- 위 사례의 경우 일반긍정사유와 일반부정사유의 개수는 동일하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집행유예를 권고

(2) 제2사례(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선의 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위 사례의 경우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집행유예를 권고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한 경우

(1) 제1사례(살인미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 위 사례의 경우 주요부정사유가 1개에 불과하여 실형이 반드시 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2) 제2사례(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요구	현저한 개선의 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위 사례의 경우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1개 많은 것에 불과하여 집행유예가 반드시 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04¹ 경합범의 집행유예 기준

현재의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법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합범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그 모든 사례를 상정하여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05¹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은 형종 및 형량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에만 문제되는데, 법관은 먼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존부를 확정하고 다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을 통해 권고되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택하거나 평가원칙에서 어느 쪽도 권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제시되지 않은 요소가 존재함으로써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권고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결론이 당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법관은 위 요소의 존재를 이유로 집행유예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양형기준 적용 사례(단일범 사건)

피해자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늦은 밤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과 식재료를 훔침. 피고인은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됨

01 | 범죄유형 결정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유형의 정의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라.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유형의 정의]를 참고하여 범죄유형을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소유형4 침입절도 유형에 해당

02¹ 권고 영역 결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 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양형심리 후 [양형인자의 정의]를 참고하여 특별양형인자의 존부를 확정

양형인자의 정의

나.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 2개 존재(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양형인자 평가결과 감경요소가 큰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 해당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03¹ 형량범위 결정

- 감경영역의 형량범위는 ‘8월 ~ 1년6월’이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특별조정’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 형량범위는 ‘4월(=8월 × 1/2) ~ 1년6월’

04¹ 선고형 결정

구분		감경요소	기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 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결정된 형량범위 ‘4월 ~ 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특별양형인자(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와 일반양형인자(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 결정

05¹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경미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2개 존재(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위원	신속희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위원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유영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이재현	변호사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채근직	변호사
전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전 상임위원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울산재판부)
전 위원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관기	변호사
	김관정	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광태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준우	전) MBC 보도본부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정호	변호사
	이근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영환	변호사

양형기준

인쇄	2023년 6월
발행	2023년 6월
발행처	양형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전화. 031-920-5619
	팩스. 031-920-5631
인쇄처	아이프린팅
	02-2671-9760